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56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강동길, 김인제, 김태수,
민병주, 박강산, 박 석,
박수빈, 박승진, 박철성,
봉양순, 성흠제, 송도호,
아이수루, 왕정순, 유정인,
, 이민옥, 이상훈, 이소라,
이영실, 임규호, 임만균,
전병주, 정준호, 최재란,
최진혁, 한 신 의원(26
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으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, 구역제 등을 설정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‘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’ 등이 도입됨.
-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 법 제13조의 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체 토지등소유자 명부, 토지등소유자 동의서,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 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, 구청장이 번호 부여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구청장은 그 즉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,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제7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,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요청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 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입안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보
2.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,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

⑦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</u> <u>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</u> <u>당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</u> <u>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</u> <u>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</u> <u>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토지등소</u> <u>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</u> <u>받아야 한다.</u> <u>②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13조의</u> <u>2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</u> <u>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영 제11</u> <u>조의2제1항에 따라 규칙에서 정</u> <u>한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서에 전</u> <u>체 토지등소유자 명부, 토지등</u> <u>소유자 동의서, 구역계를 첨부</u> <u>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③ 정비계획의 입안요청을 위한</u> <u>동의를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</u> <u>는 동의를 받기 전에 구역계를</u> <u>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</u> <u>려야 하며, 구청장이 번호 부여</u>		

한 동의서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한 구청장은 그 즉시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,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에 구역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영 제7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,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토지등소유자가 제출한 요청 서류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시장에게 보고 후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13조의2제2

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
1. 입안 요청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보

2.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, 해당 구역이 속한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

⑦ 시장은 영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작성을 위한 절차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등 ‘입안요청제’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9조의2(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등)를 신설 하여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

※ 2024년 서울시 공공정비계획 수립 사업현황

(단위:천원)

사업명	사업내용	2024년 예산
공공정비계획수립 (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)	○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250,000,000원*30개소 = 7,500,000천원	7,500,000천원

*2024년 서울시 예산서 참고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 계 분 석 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